

=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=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6. 6. 5 .----- 최광렬의원의 6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5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39회 임시회(개회중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06.6.1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2006. 4. 28일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동법 제34조의3(지방의회의 의무 등)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의원 윤리강령 준수 의무 규정 및 윤리강령 제정(제2조)
- 의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준수와 직권남용금지 규정(제3조 내지 제5조)
-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금품 등 취득금지(제6조)
-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사항 준수 및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(제9조)
- 의원은 심의대상 안전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.(제10조)
-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.(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제정 조례안은 2006. 4. 28일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려는 것으로

- 의원으로서 품위유지, 직권남용 금지, 직무관련 금품취득금지, 기밀누설금지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및 규범 그리고, 준수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한 내용임.

○ 특히 별도 마련된 ‘윤리강령’은 지난 제3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로 채택하였으나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제정 제도화 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의원의 품위유지는 물론이고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인격과 식견 함양 등을 직시하고 있어 제5대 의회 출발에 즈음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정신적인 규범이 될 수 있다고 봄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